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92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10월 15일, 유정희 의원 외 28명

나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일자: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유정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”를 “환경교육 활성화 및”으로, “정함”을 “규정함”으로, “실천하도록 하는”을 “실천할 수 있도록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원할 책무를 진다”를 “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계획”을 “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이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”을 “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”로, “환경교육 관련 분과위원회”를 “환경교육분과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요청 할”을 “요청할”로, “요청을 받은 경우”를 “이 경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, “의뢰 할”을 “의뢰할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”을 “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환경교육실시”를 “환경교육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피고용자에 대한”을 “고용된 사람에게”로, “제공한다”를 “제공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)”을 “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”을 “지역환경교육센터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제1항의”를 각각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제5항의 세부지정요건”을 “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하여 제9조제1항의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”를 “지역환경교육센터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예산의 전부”를 “경비의 전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</u>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<u>실천하도록 하는</u> 여건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환경교육 활성화 및</u> ----- ----- <u>규정함</u>----- ----- <u>실천할 수 있도록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<u>지원할 책무를 진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이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</u>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,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</p>	<p>제3조(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
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 교육 관련 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④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확정 한 후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계획의 시행) ① 시장은 교 육감, 자치구청장 등에게 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, 자 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, 자 치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

제5조(환경교육에 관한 자문)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1. ~ 5. (생 략)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시장이 교 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 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

----- 환경 교육분과위원회-----

④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4조(교육계획의 시행) ① -----

----- 요청할 -----
-----, 이 경우 -----

② ----- 따라 -----

----- 의뢰할 -----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환경교육에 관한 자문) -----
----- 각 호의 사항 -----
----- 에 대해서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시장은 학 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
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8. (생략)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
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
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
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
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
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
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
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
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
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
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
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
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
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
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진흥법 시
행규칙」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
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
용한다.

⑥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
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
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

할 수 있다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 -
----- 환경교육에 대한

-----.

② ----- 고용된 사람에
게 -----
----- 제공하
여야 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지역환경교육센터를 -----

-----.

⑤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⑥ 제1항에 따른 -----

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5항의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제10조(환경교육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,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-----

-----.

제10조(환경교육의 위탁 등) ① -----

-- 위하여 -----
----- 지역환경교육센터
에 -----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

----- 경비의 전
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